

동두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예비심사보고서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안자 : '99. 12. 14 동두천시장이 제출

나. 회부일자 : '99. 12. 20

다. 상정일자 : 제91회 동두천시의회 정기회

제3차 본회의 상정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 상정, 제안설명, 질의답변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제2,3차 회의, 토론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 예비심사보고서 채택

2. 제안설명의 요지

가. 제안이유

'99을지연습 평가결과 접적지역에 위치한 우리시에 적의 화생방 공격과 가스 누출사고 등에 대처할 수 있는 화생방 전담공무원이 전무하여 이에 대한 대처능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경기도의 인력보강 승인에 의하여 동조례를 개정하려고 하는 것임.

나. 주요골자

○ 동두천시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를 430명에서 431명으로 조정함.

3. 전문위원 검토보고

본 개정조례는 행정자치부에서 지난 11. 15 접적지역에 대한 방호능력을 강화하고 가스누출사고등에 대비하여 대처능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별정 7급 상당 정원을 우리시에 1명 보강하여 주는 것으로 우리시 정원이 430명에서 431명으로 1명이 증원되겠음.

4. 질의 및 답변요지